

전자어음 서비스설명서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**참고자료**이며, **실제 계약은 전자어음거래약관이 적용**됩니다. **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**됩니다.

1. 개요 및 특징

- 전자어음은 약속어음을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화한 어음으로서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전자어음관리기관(이하 '관리기관')에 등록된 지급수단입니다.
-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추가적으로 발행인의 경우에는 은행에 당좌예금이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전자어음거래를 위해 관리기관에 등록되며 전자어음의 발행인, 수취인, 배서인, 보증인, 소지인으로서 발행, 수취, 배서, 보증, 지급제시 등의 전자어음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전자어음 거래는 사용자 본인의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하며, 은행이 이용자의 거래요청을 접수하고, 그 내용이 관리기관으로 전송되어 저장된 때에 성립합니다.

2. 수수료에 관한 사항

- 이용자는 관리기관 또는 은행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, 전자어음의 반환 또는 수령거부시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.
- 수수료는 당좌계좌 또는 수취계좌에서 별도의 예금 청구서 없이 출금할 수 있습니다.

3. 서비스해지에 관한 사항

-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은행에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.

4. 거래 제한에 관한 사항

- 이용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전자어음거래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관련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관련 약관, 법령, 규약 등의 이용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
-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
-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(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출금하지 못한 경우 포함)

5. 은행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

-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하며,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. 통장, 접근매체의 도난 및 분실,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생 시 즉시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.

6. 기타 계약의 주요내용

- 전자어음거래 이용시간은 영업일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입니다.
- 전자어음거래에는 전자어음거래약관과 함께 관리기관의 전자어음업무규약 및 전자어음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.